〈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모두의 주방』정보공개서

㈜모두벤쳐스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모두벤쳐스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 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0141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10-2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11-29

『모두의 주방』가맹사업본부 ㈜모두벤쳐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7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전화번호	02-558-2025	팩스번호	02-558-2024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02-558-2025				
홈페이지	http://modoojoobang.co.kr	담당자 이메일	pcsoon2@naver.com				

- 2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별첨 서류
-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모두벤쳐스 영업표지		모	두의 주방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521, 17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나스타워)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이사	나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대표팩스번호
2019-07-17	2019-07-22	박형주	02-558-2025 02-558-		02-558-2024
법인등록번호	110111-7174595	사업자등록번호 826-		6-81-01190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7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대표이사	사	모두의 주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모두벤쳐스		박형주	02-558-2025	02-558-202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7층 (1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감사	신현주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취모두벤셔스	-	박형주	20-558-2025	02-558-202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I.	
관계	-	영업표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관계 사내이사	양자민 /	영업표지 모두의 주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대표팩스번호	
	-			· 테헤란로 521, 17층 (
	양자민 /		대표자	테헤란로 521, 17층 (·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사내이사 관계	양자민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대표자	테헤란로 521, 17층 (* 대표전화번호 02-558-2025 주 소	대표팩스번호 02-558-2024	
사내이사	양자민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영업표지 모두의	대표자 박형주	테헤란로 521, 17층 (* 대표전화번호 02-558-2025 주 소	대표팩스번호 02-558-202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모두벤쳐스**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모두의 주방』	-
상 호	『모두의 주방』 점	-
상표(서비스표)	모두의 주방	사용로고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2021년	2,871,742	321,551	2,550,190	1,782,185	-1,062,805	-1,018,011	
2022년	2,916,329	821,206	2,095,123	1,760,869	-2,557,643	-2,454,960	
2023년	2,131,157	1,238,327	892,830	1,792,096	-1,167,410	-1,202,292	
☞ 위 재무상황의 근거는 별첨의 재무제표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위 1)과 같습니다.

(유모두벤^셔스 『모두의 주방』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ΛIZ	성지이	사업경력						
이름	현 직위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박형주	대표이사	2019.07.17 ~ 현재	㈜모두벤쳐스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787	대표이사	2018.07.17. ~ 현재	㈜박앤박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신현주	감사 2019.07.17 ~ 현재		㈜모두벤쳐스 감사	감사				
선연구	감사	2022.01.31. ~ 현재	㈜박앤박 감사	감사				
양자민	사내이사	2021.02.22. ~ 현재	㈜모두벤쳐스 사내이사	사내업무 지원				
6시킨	감사	2018.07.17. ~ 2021.03.31	㈜박앤박 감사	감사				
정우진	기타비상무이사	2021.02.22. ~ 현재	㈜모두벤쳐스 비상무이사	사내업무 지원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식권 구(당)	
2023년 12월 31일	2	2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 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3 -

(위모두벤^셔스 『모두의 주방』

관계	상호 / 이름	영업표지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철순이네 김치찌개		2018-08-01 ~ 현재	철순이네김치찌개(등록번호 : 2018088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김치찌개)사업 경영
		혼밥대왕		2020-03-02 ~ 현재	혼밥대왕(등록번호 : 20191104)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비빔밥)사업 경영
		쭈꾸밍		2021-01-08 ~ 현재	쭈꾸밍(등록번호 : 20201163)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밥도둑 한끼뚝딱		2020-01-03 ~ 현재	밥도둑한끼뚝딱(등록번호 : 20201164)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비돈이 제돈이		2021-07-27 ~ 현재	비돈이제돈이(등록번호 : 20201823)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박앤박 / 박형주	바로덮밥, 바로파스타 &경양식	다른 가맹본부 [(주)박앤박] 대표이사로 재직	2021-03-08 ~ 현재	바로덮밥,바로파스타&경양식 (등록번호 : 20213758)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사업 경영
		바로반점		2023-01-30 (양수일 기준) ~ 현재	바로반점(등록번호 : 20230081)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기리(giri)		2023-04-24 (양수일 기준) ~ 현재	[기리(giri)] (등록번호 : 20230582)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사업(돈가스, 카레 등) 경영
		라이라이스		2024년 예정	라이라이스(등록번호 : 20231840)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오므라이스 등) 경영
		오늘의돈까 스&카레		2024년 예정	오늘의돈까스&카레(등록번호 : 20231841)라는 영업표지의 한식(돈까스, 카레 등) 경영

- 4 -

관계	상호 / 이름	영업표지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철순이네 김치찌개		2018-08-01 ~ 현재	철순이네김치찌개(등록번호 : 2018088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김치찌개)사업 경영		
		혼밥대왕		2020-03-02 ~ 현재	혼밥대왕(등록번호 : 20191104)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비빔밥)사업 경영		
		쭈꾸밍		2021-01-08 ~ 현재	쭈꾸밍(등록번호 : 20201163)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밥도둑 한끼뚝딱		2020-01-03 ~ 현재	밥도둑한끼뚝딱(등록번호 : 20201164)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비돈이 제돈이		2021-07-27 ~ 현재	비돈이제돈이(등록번호 : 20201823)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감사)	㈜박앤박 / 신현주	바로덮밥, 바로파스타 &경양식	다른 가맹본부 [(주)박앤박] 감사로 재직	2021-03-08 ~ 현재	바로덮밥,바로파스타&경양식 (등록번호 : 20213758)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사업 경영		
		바로반점				2023-01-30 (양수일 기준) ~ 현재	바로반점(등록번호 : 20230081)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라이라	기리(giri)		2023-04-24 (양수일 기준) ~ 현재	[기리(giri)] (등록번호 : 20230582)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사업(돈가스, 카레 등) 경영		
		라이라이스			2024년 예정	라이라이스(등록번호 : 20231840)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오므라이스 등) 경영	
		오늘의돈까 스&카레		2024년 예정	오늘의돈까스&카레(등록번호 : 20231841)라는 영업표지의 한식(돈까스, 카레 등) 경영		

- 5 -

(유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상표 (서비스 표)	권리 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 기간 만료일
모두의 주방	35류 36류 37류 43류	2019-07-02 출원 2020-07-03 등록	40-2019-0101917 출원 40-1621792-0000 등록	양자민	2030-07-03

※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양자민이며, 존속기간 만료일 까지 그 사용을 허락받았습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모두의 주방』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0년 1월 31일 (1호 가맹점 오픈일)

* 직영점 시작일 : 2019년 09월 01일

2. 『모두의 주방』연혁

☞ 『모두의 주방』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박형주	2020-01-31 ~ 2021-0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29, 지하1층 (역삼동)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박형주	2021-02-22 ~ 2023-04-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76 (역삼동)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박형주	2023-04-01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521, 17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 『모두의 주방』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모두의 주방	임대	공유주방 임대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 ^1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2	14	8	40	28	12	31	21	10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서울	17	11	6	26	17	9	20	13	7
부산	1	-	1	2	1	1	1	-	1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3	1	12	10	2	10	8	2
강원	-	-	-	-	-	-	-	-	-
충북	ı	-	ı	ı	-	-	-	1	1
충남	ı	-	ı	ı	ı	ı	-	ı	ı
전북	ı	-	ı	ı	ı	ı	-	ı	ı
전남	ı	-	ı	ı	1	1	-	1	1
경북	-	-	-	ı	-	1	-	1	1
경남	-	-	-	ı	-	1	-	1	1
제주	-	-	-	-	-	-	-	-	-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 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12	4	-	2	-	14
2022년	14	14	-	-	-	28
2023년	28	-	-	7	-	21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 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의 총 수
- ☞ 당사는 [모두의 주방]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벤쳐스

			정보공개서		가맹:	점/직영점	의 수
구분	상호 / 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철순이네 김치찌개	20180882	한식	1/-	1/-	1/-
		쭈꾸밍	20201163	한식	15/-	10/-	5/-
		밥도둑 한끼뚝딱	20201164	한식	48/-	33/-	14/-
		혼밥대왕	20191104	한식	152/-	130/-	97/-
- 특수관계인	박형주	비돈이 제돈이	20201823	한식	30/-	34/-	14/-
(대표이사)	(대표이사)	바로덮밥, 바로파스타 &경양식	20213758	기타외식	5/-	80/-	109/-
		바로반점	20230081	중식	-/-	-/-	10/-
		기리(giri)	20230582	기타외식	-/-	-/-	-/-
		라이라이스	20231840	기타외식	-/-	-/-	12/-
		오늘의돈까스 &카레	20231841	한식	-/-	-/-	12/-
			정보공개서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2022. 2023.		
구분	상호 / 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2022. 12.31.	2023. 12.31.
		철순이네 김치찌개	20180882	한식	1/-	1/-	1/-
		쭈꾸밍	20201163	한식	15/-	10/-	5/-
		밥도둑 한끼뚝딱	20201164	한식	48/-	33/-	14/-
		혼밥대왕	20191104	한식	152/-	130/-	97/-
	11-11-	비돈이 제돈이	20201823	한식	30/-	34/-	14/-
특수관계인 (감사)	신현주 (감사)	바로덮밥, 바로파스타 &경양식	20213758	기타외식	5/-	80/-	109/-
		바로반점	20230081	중식	-/-	-/-	10/-
		기리(giri)	20230582	기타외식	-/-	-/-	-/-
		라이라이스	20231840	기타외식	-/-	-/-	12/-
		오늘의돈까스 &카레	20231841	한식	-/-	-/-	12/-

7.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71 00 74	연간 평균	매출액	상	·한	히	·한	
지역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m² 당	비고
전체	21	55,171	975	118,200	2,099	8,000	152	21곳 산정
서울	13	58,200	1,004	118,200	1,843	19,800	415	13곳 산정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8	50,250	925	77,600	2,099	8,000	152	8곳 산정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임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하였 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모두의주방]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모두의주방』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1	993일		

- * 위 평균영업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 말『모두의주방』과 관련하여 광고비와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 기재하였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딘	위 : 천원, 부기	·세 미포함)	비고
⊤世	TU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17
합계	-	-	93,845	93,845	-	비공개
광고	비공개	비공개	93,845	93,845	-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	-	-	비하게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험회사 : (주)서울보증보험, 상품명 : 프랜차이즈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11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험회사 : (주)서울보증보험, 상품명 : 프랜차이즈보 증보험)에 가입하여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모두벤쳐스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과 최초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 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 는 날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 12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13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모두의 주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11,000	-	-	-	(예외조건)
가입비	11,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면제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 시 반환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	-	-	-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1,000	-
가입비	11,0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면제	면제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면제

- 14 -

㈜모두벤셔스
『모두의 주방』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매장별 상이)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합계	-	264,000	4,400	-	약 198㎡ (약 60평)기준
인테리어					* 시세에 따라 변동 가능
간판	가맹본부	264,000	4,400	개별 협의	*공유주방 특성상 인테리어, 간판, 설비 부분이 한패키지로 금액이 책정되어
설비 및 기기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포괄 금액을 기재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고, **당사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검수비는 없습니 다.**

2) 필수 구입 내역: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 밖의 영업 신고, 어닝, 냉난방기, 오디오, 스피커, 익스테리어, 사업자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실외 배관공사, 가스/소방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시 매장 실측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15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 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 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전체 임대료 (공실포함)의 5.5%	매월 말일	반환안됨	소멸성	매월 지급
입점수수료	가맹본부	입점부스의 1개월 임대료	즉시 지급	반환안됨	소멸성	가맹본사가 공실인 부스에 임차인을 입정시키는 경우 발생
POS	협력업체	66	-	반환안됨	소멸성	매월 지급
광고·판촉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작 활 판촉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당사 부담 (예외 있음)	-	-	-	경우에 따라 실비 지급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가 요구 시 : VII.1 외 비용 부담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 지급 기일 경과 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모두의주방] 가맹사업은 임대수익 사업 구조이기에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아 기재를 하지 않습

유모두번쳐스 『모두의 주방』

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은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1) 귀하가 운영하는 『모두의 주방』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포괄양도 등에 따라 가맹비의 50%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신규 가맹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 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1)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 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 원상회복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 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9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모두의 주방]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 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 [모두의주방] 가맹사업은 임대수익 사업 구조이기에 주요품목이 발생하지 않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 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는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 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성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3) 가맹 가격 길	아래> 점 사업자의 결정의 제한 ·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 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상품 및 서비스 (메뉴)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임대료	1,980,000(부가세 포함)	가맹계약시 및 정책, 상권 주변시세 등에 따라 임대료 변동이 필요할 경우 서면, 문자, 통화, SNS를 통하여 공지	2020년 9월 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속한 지역내의 상권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상기 기재한 임대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충혈만 합충 급취	가맹본부	계열회사
주방공간을 임대 하는 공유주방 업종	모두의주방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재조정(변경) 가능 여부
점포소재지가 속한 건물당 1개소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가맹점 사업자 동의 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모두의 주방」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 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 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23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국내 온라인/오프	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H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46.74%	53.2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모두의주방』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5]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5]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D,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25 -

㈜모두벤셔스
『모두의 주방』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 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 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4조 3항)

- 1. '을'이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 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2. '을'이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3.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4.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 7. '갑'이 '을'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 8.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9. '갑' 또는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가맹계약서 제22조 1항)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 된 경우
- 2.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3. '을'이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 하는 경우

- 4.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 6. '을'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 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을'이 경업을 하거나 '을'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 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 8. '을'이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 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9. '을'이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10. '을'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 하는 경 우
- 11. '을'이 노후 된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2.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1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1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6. '을'이 '갑'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17.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8.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19.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 반하는 경우
- 20.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 할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 34조 4항)

-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 대하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주)모두벤쳐^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귀하가「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기 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 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 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그 그 귀리 이브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

	약 체결	→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	→가맹점운	영
	권 상속	·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 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 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모두의 주방]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 동안은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 [모두의주방]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 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8.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연중무휴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 29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1명	자율	198㎡ (약 60평) 기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丁正	유교 유덕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교시	9175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광고기획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30%	총 광고비의 70%	_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수령 후 7일이내 지급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할인행사	총 판촉비의 20%	총 판촉비의 80%	и	"
판촉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20%	증정상품 출하가 80%	"	ıı
전체 행사	팸플릿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20%	판촉물 제작비용 80%	"	и
	기타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u.	п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 없음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당해 가맹점 점포에서 '모두의 주방' 사업 이외의 다

- 31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른 사업을 영업 하는 경우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영업의 표준화)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 원(\(\mathbr{H}\)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영업양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 금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지하는 경우와 제32조(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임의중단 또는 폐업처리하거나 '모두의 주방'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 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198m²(약 60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4)번 항목 참조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 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33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 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34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35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원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사(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하	문의: 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5시간	0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개점 후 교육	추후 공지	당사 부담(예외 있음)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37 -

㈜모두벤쳐스
『모두의 주방』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11개월	-

*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직영점수로 나눈 기간을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 였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24,36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부가가치세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주)**모두벤쳐**^ 『모두의 주방』

[별첨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9 -

(주)**모두벤쳐**^ 『모두이 주방』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안 쪽)

			(),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ମ ଟ ଳ ଆ ମ୍ପଟ୍ରମ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 예금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			

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